

창원지방법원
제 1 행정부
[2018구합50220]

사 건 명 : 요양불승인처분취소

원 고 : 원고1

김해시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

담당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18. 11. 28.

판결 선고 : 2019. 01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

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11. 28.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 이라고 한다) 제9조에 따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, 원고는 2015. 12. 3. 사망한 ○○○의 배우자이다.

나. 원고의 남편 ○○○은 2015. 10. 4. ○○○과 2015. 10. 4.부터 2016. 3. 31.까지 ○○○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(이하 '이 사건 선박' 이라고 한다)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(이하 '이 사건 근로계약' 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그러나 ○○○은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일정이 잡히지 않아 ○○시 소재 '○○○항' 인근에서 승선을 대기하던 중 2015. 11. 24. 03:00경 뇌경색이 발병하였고(당시 ○○○이 선원 숙소로 제공한 모텔에서 휴식 중이었다),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. 12. 3. 심정지로 사망하였다.

라. 한편 ○○○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7. 10. 28.경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에 따라 ○○○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126,428,900원, 장례비 11,670,36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마. 그러나 피고는 2017. 11. 28. 원고에게 ○○○이 직무상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(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)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 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 제1 내지 1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3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○○○의 처인 원고가 어선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어선원재해보상법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, 제2항, 선원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"선원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"에 해당하여야 하는데, 원고는 ○○○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었거나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, 신청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4호증과 증인 ○○○(원고와 ○○○ 사이의 자)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○○○과 사망 당시에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○○○은 ○○○에게 어선원으로 고용되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에 정한 직무상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, 또한 원고는 ○○○의 배우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3, 6,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, ○○○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에 정한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